

개정 전	개정 후
	<p>•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p>

■ 법률 부칙

제4조(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제4호・제5호 및 제85조의 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